「포항시 남구·북구·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」 민간위탁·운영(재위탁) 동의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10월 6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10월 7일

다. 상정일자

❍ 제334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

•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10. 15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, 노동, 의료, 생활, 심리상담 등 전문인력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,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❍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포항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다. 관계법령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❍ 「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」 제13조(업무의 위탁)

❍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의회 동의)

라. 주요내용

❍ 위탁 대상사무명 : 포항시 (남구・북구・여성)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위탁 운영

❍ 위탁사무의 내용

-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- 외국인근로자 상담, 한국어 교육,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❍ 민간위탁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 (3년)

❍ 수탁기관 선정방식 : 재위탁 (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)

❍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

-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있는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 됨

❍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

- 심의근거 :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의2 및 제6조
- 심의개요
- 심의일자 : 2026. 8. 21.(금)
- 심의방법 : 대면심의
- 심의내용 : 포항시 남구・북구・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

❍ 위탁운영 추진계획

- 위탁운영 기간 : 2027. 1. 1. ~ 2029. 12. 31. (3년)
- 추진일정
  - 2026. 10. : 제334회 포항시의회(제1차정례회) 동의
  - 2026. 11. : 수탁기관 공개모집
  - 2026. 12. :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, 민간위탁 계약 체결
  - 2027. 1. : 위탁운영 개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박종율)

❍ 본 동의안은 포항시 남구·북구·여성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, 경험과 책임성,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
❍ 본 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·법률·인권·생활·심리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3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, 외국인근로자 상담, 한국어 교육,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,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 741,816천원(도비 189,163천원, 시비 441,381천원, 자부담 111,272천원)이 소요될 예정임.

❍ 검토결과,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상담·교육 등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으로,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·현장 대응력 및 서비스의 지속성 측면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며, 관련 위탁 근거와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도 이행된 바, 법적·절차적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다만, 현재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3개소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만큼, 단기적으로는 각 센터의 역할과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되, 장기적으로는 상담수요와 이용현황, 운영인력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하나의 통합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점 또는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방안 등 운영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　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　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